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

기후환경본부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

기후환경본부

총 1건 건의

목 록

연 번	건의제목	건의부서
1	지자체 녹색생활 확산 제도 시행 법적 근거 마련 (「대기환경보전법」 및 「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」 개정 건의)	친환경 건물과

법령 · 제도개선 건의사항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1. 지자체 녹색생활 확산 제도 시행 법적 근거 마련 (법무담당관, '23. 10. 13.)</p> <p>2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및 시행령 개정 건의 (친환경건물과, '23. 8. 7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변화 실천지원사업 및 녹색생활 확산제도(에코마일리지 등)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법에 위임조항 등이 미비 ○ 에코마일리지 지급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주민번호를 처리, 에코마일리지 신청 주소와 실거주여부 확인이 필요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에코마일리지의 경우 마일리지 지급 대상자의 평가 대상기간 동안 실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하나 개인정보보호 강화조치로 법령(법률 및 시행령)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자료 이용 및 활용에 제한 ○ '기후위기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업'은 환경부장관에게 부여된 고유사무이고, 지자체 위임조항이 없으므로 우려시는 주민번호 관련 정보처리 불가 통보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후·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○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제도(에코마일리지 등) 추진 근거 명문화 	<p>(환경부)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·활용을 위한 고유 식별정보 처리 조항 신설 ○ 관련법 개정으로 지자체 사업에 대해 고유식별정보 이용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□ 관련 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 제2항 ○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○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67조 3항 	